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관급자재(목재테크)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횡성군, 영월군

관 련 자 ① 횡성군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영월군 ○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11. 4.부터 2016. 3. 7까지 횡성군 ○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“○○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○○○ 전망테크(난간구조물) 구매” 업무를 추진하였고,,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3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군 ○○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“○○읍소재지 종합정비공사 관급자재(목재테크) 구매” 업무를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」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공개경

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외부의 특혜 시비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를 보유한 업체인지 등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검토·확인하여야 했다.

1. 횡성군 관련

횡성군에서는 2015. 00. 0. “○○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○○○ 전망테크(난간구조물) 구매” 계약(계약금액 189백만원)을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대표 ○○○)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○○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. 10. 27. 구매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능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인 (주)○○○○○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나 동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.⁵⁸⁾

2. 영월군 관련

영월군에서는 2015. 0. 00. “○○읍소재지 종합정비공사 관급자재(목재테크) 구매” 계약(계약금액 335백만원⁵⁹⁾)을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대표 ○○○)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○○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. 6. 9. “○○읍소재지 종합정비공사 관급자재(목재테크) 구매”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능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인 (주)○○○○○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나 동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.⁶⁰⁾

그러나 계약 당시의 (주)○○○○○는 위 관서들에서 구입하고자 하였던 ‘목

58) 위 관서의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 및 조달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

59) 2015. 12. 14. 변경계약을 통해 320백만원으로 조정됨

60)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’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당시인 2014. 10월~2015. 5월에 수의계약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였다고 하고 이후에 실제 구매할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함

재테크(품명번호 000000000)'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로서 2016. 4. 11.에서야 중소기업중앙회⁶¹⁾로부터 직접생산증명이 승인되었다.

더구나 위 업체는 '목재판재(품명번호 000000000)' 물품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기준 미달(생산시설 미비)로 2015. 0. 00.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⁶²⁾가 취소된 상태로써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아니었다.

그 결과 특정업체가 경쟁입찰 절차 없이 계약을 수주하게 되어 같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형성군수, 영월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맞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61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생산에 관한 조사·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

62) 감사기간 중 사업추진 당시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여부를 요구하자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을 받았으나, 해당 증명서는 위 관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'목재테크'가 아닌 '목재판재'에 대한 취소되기 이전의 증명서였음(발행일 : 2014. 4. 24. / 유효기간 : 2013. 12. 26.~2015. 12. 25.)